

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의안번호 제204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 및 발의일자 : 2019. 10. 01. 이 쌍 자 의원 외 5인
나. 회 부 일 자 : 2019. 10. 14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19. 10. 16. 의회운영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우리 군 의회 회의규칙에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등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표현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및 조례의 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
나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미준수 사항 수정
- “전일” ⇒ “전날” (안 제9조)
 - “의사일정의 미료안건” ⇒ “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” (안 제18조)
 - “한한다” ⇒ “한정한다” (안 제19조)
 - “저촉되는” ⇒ “어긋나는” (안 제26조)
 - “의제외에 미치거”, “성질에 반하여” ⇒ “의제와 관계없거”, “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” (안 제31조)
 - “전일” ⇒ “전날(토요일·공휴일은 제외한다)” (안 제33조)
 - “약간인” ⇒ “몇 명” (안 제42조)

- “피심의원” ⇒ “심사대상 의원” (안 제70조, 안 제71조, 안 제72조)
- “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)” ⇒ “(위원회의 답변서 심사)” (안 제71조)
- “깍연” ⇒ “흡연” (안 제74조, 안 제80조)
- “주기가” ⇒ “술기운이” (안 제79조)
- “서적류의 열독행위” ⇒ “서류를 소리 내어 읽는 행위” (안 제8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-27호

- 입법예고기간: 2019. 10. 4. ~ 10. 10.(6일)

- 의견반영 등 조치내용: 의견없음

다. 기타사항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규칙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, 타법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7. 토 론 : 없음.

8. 심사결과

- 2019. 10.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